

첨부 1. 약관의 신규대비표

약관의 신·구 대비표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	사유
제 13 조 4 항 3 호	제 13 조(보험 및 자기부담금) (생략) ③ 고객은 대여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 <u>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비스센터에서</u> 수리한다. <u>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시</u>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의 책임으로 하며, 회사는 면책된다. (생략)	제 13 조(보험 및 자기부담금) (생략) ③ 고객은 대여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 <u>회사가 지정하는 Mercedes-Benz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대여차량을</u> 수리한다. <u>회사가 지정하는 Mercedes-Benz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에서</u> 대여차량을 수리한 경우,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의 책임으로 하며, 회사는 면책된다. (생략)	당사는 사고차량의 안전성 재고 및 차량의 잔존가치 유지를 위해 Mercedes-Benz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정비/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 부분을 명확히 표기하여 고객의 오해의 소지를 낮추고자 함.
제 19 조 하단 설명	제 19 조(반환된 대여차량의 평가) (생략) * <u>지정 서비스센터</u> 이외에서 대여차량에 대한 수리 및 유지/보수를 진행할 경우, 추가적인 감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(생략)	제 19 조(반환된 대여차량의 평가) (생략) * <u>지정 Mercedes-Benz 공식 서비스센터</u> 이외에서 대여차량에 대한 수리 및 유지/보수를 진행할 경우, 추가적인 감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(생략)	